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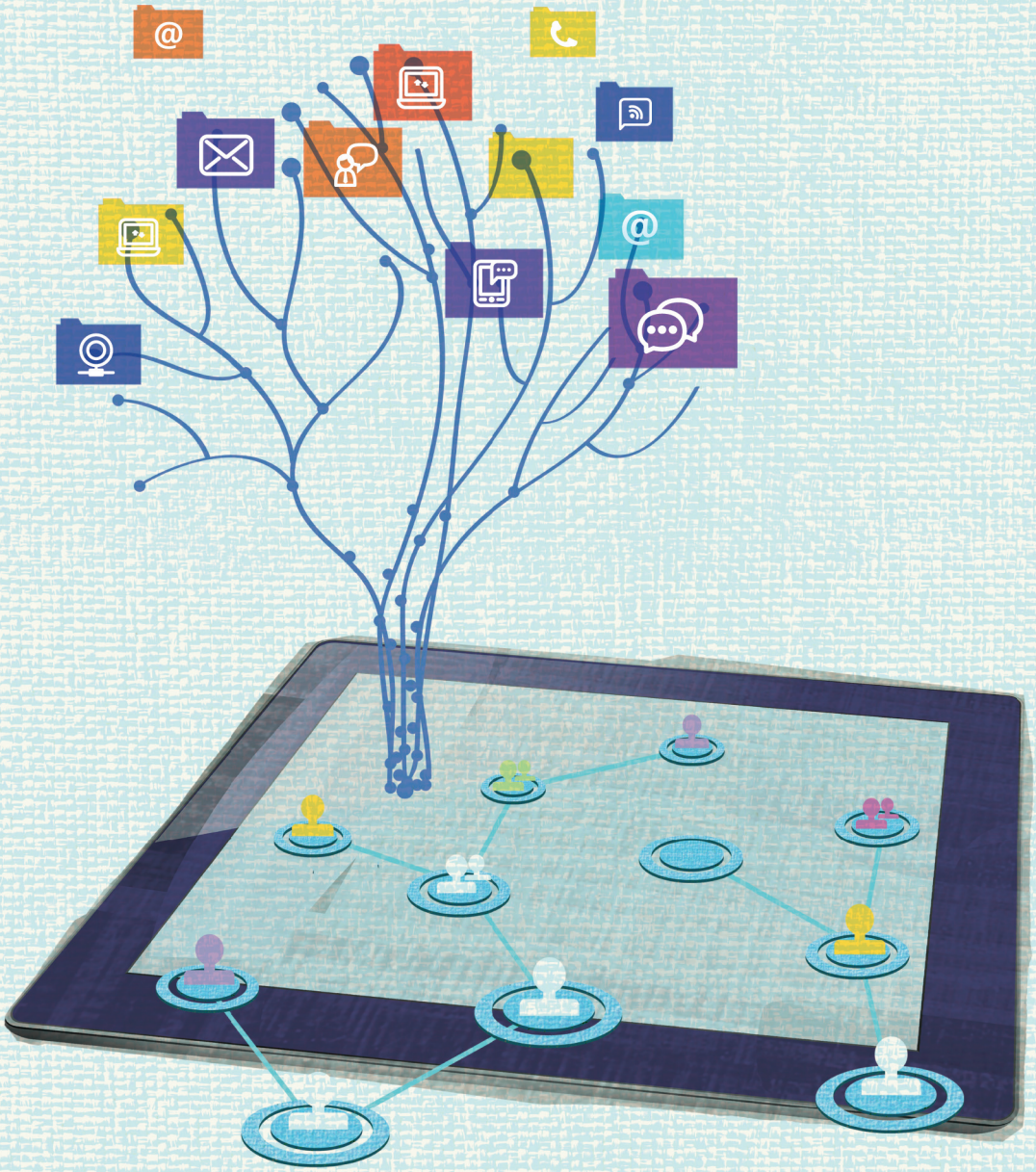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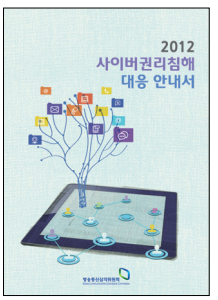

발 행 인 : 박 만
발 행 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　　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TEL. 02-3219-5100 ~5
홈페이지 : www.kocsc.or.kr
발 행 일 : 2012년 11월 (비매품)
디 자 인 : 조움커뮤니케이션즈 TEL. 02-6271-2240

이 대응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발간됩니다.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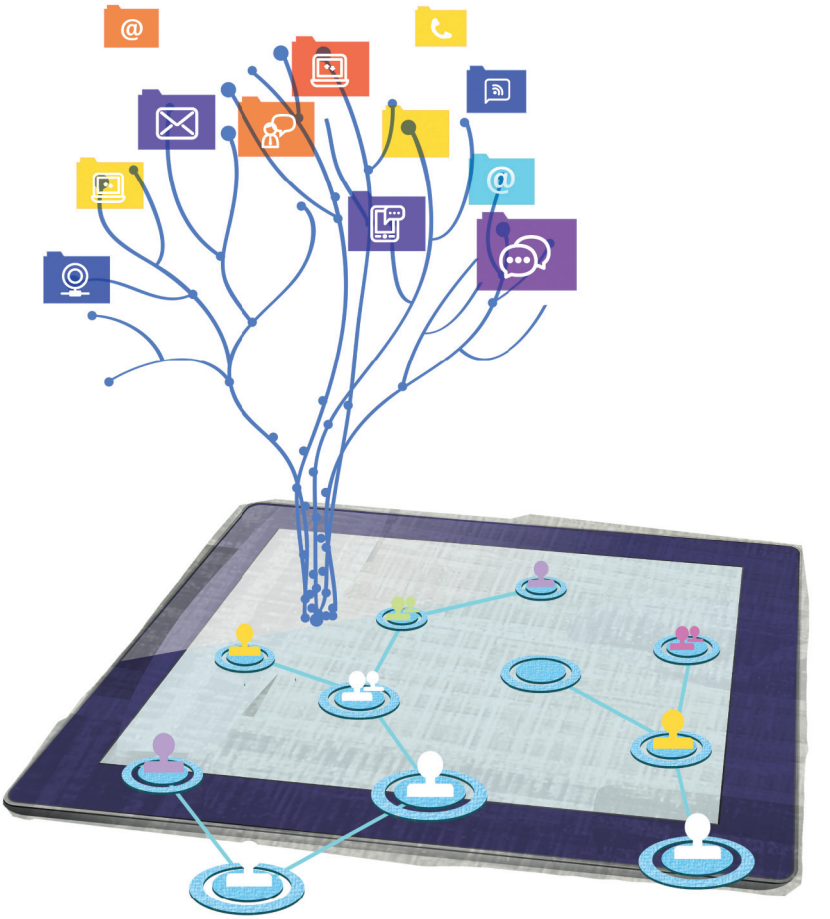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만입니다.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지도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더욱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사이버권리침해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발생하기 쉬운 피해 사례를 통해 권리침해 예방 방법 등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 안내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의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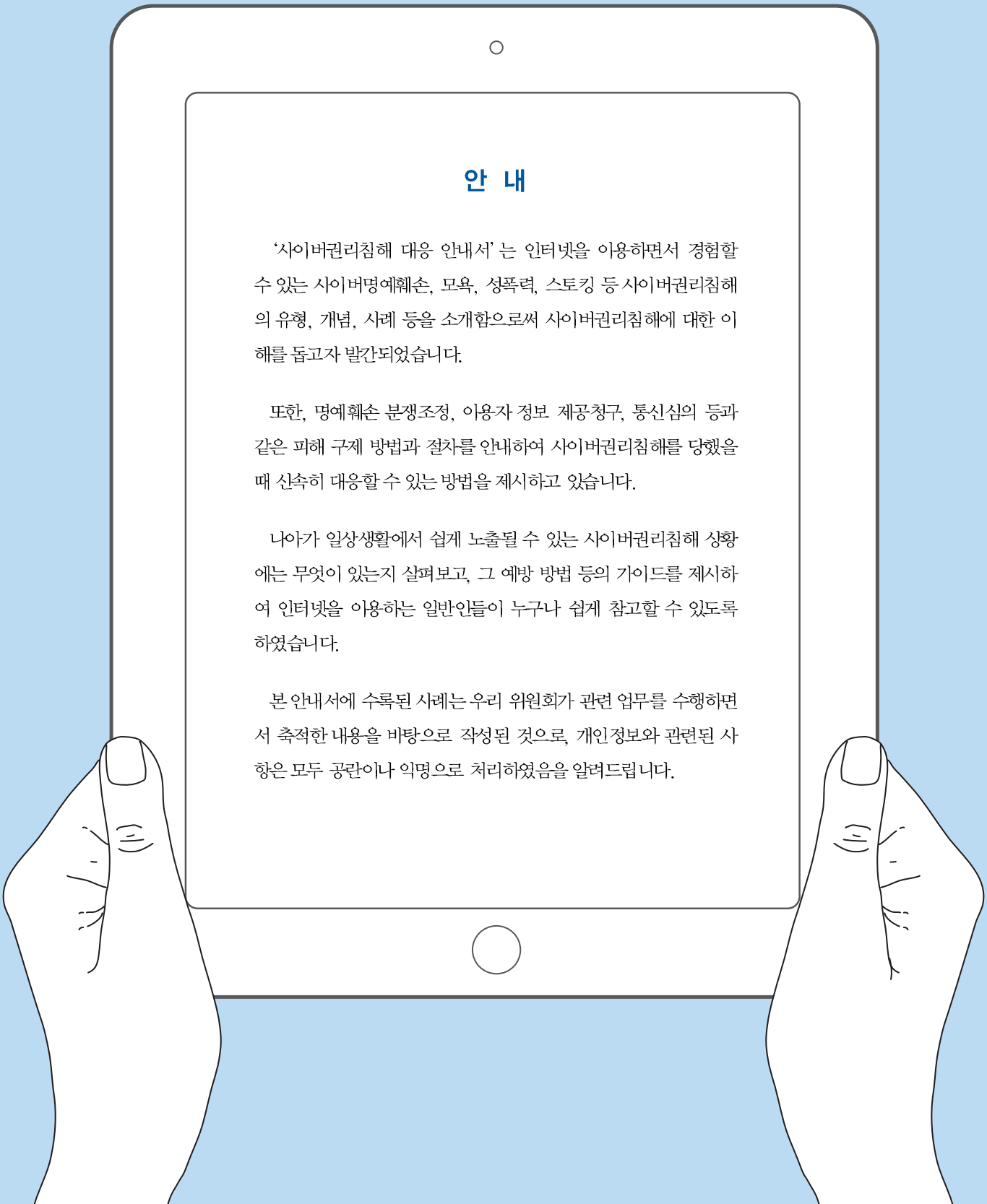

안 내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 개념,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통신심의 등과 같은 피해 구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여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이버권리침해 상황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예방 방법 등의 가이드를 제시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 수록된 사례는 우리 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공란이나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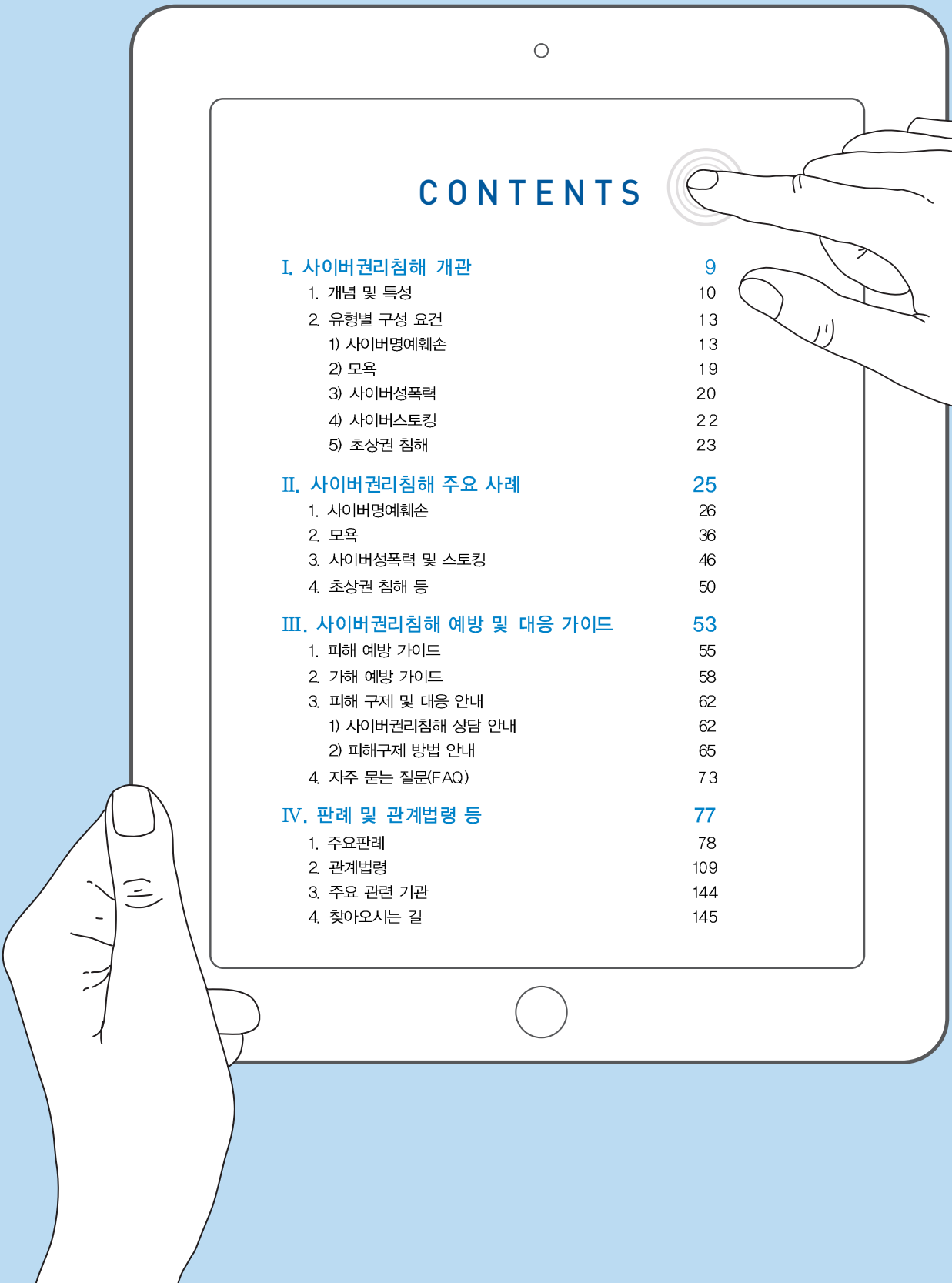

CONTENTS

Ⅰ. 사이버권리침해 개관 9
1. 개념 및 특성 10
2. 유형별 구성 요건 13
1) 사이버명예훼손 13
2) 모욕 19
3) 사이버성폭력 20
4) 사이버스토킹 22
5) 초상권 침해 23

Ⅱ. 사이버권리침해 주요 사례 25
1. 사이버명예훼손 26
2. 모욕 36
3. 사이버성폭력 및 스토킹 46
4. 초상권 침해 등 50

Ⅲ.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 53
1. 피해 예방 가이드 55
2. 가해 예방 가이드 58
3. 피해 구제 및 대응 안내 62
1)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안내 62
2) 피해구제 방법 안내 65
4. 자주 묻는 질문(FAQ) 73

Ⅳ. 판례 및 관계법령 등 77
1. 주요판례 78
2. 관계법령 109
3. 주요 관련 기관 144
4. 찾아오시는 길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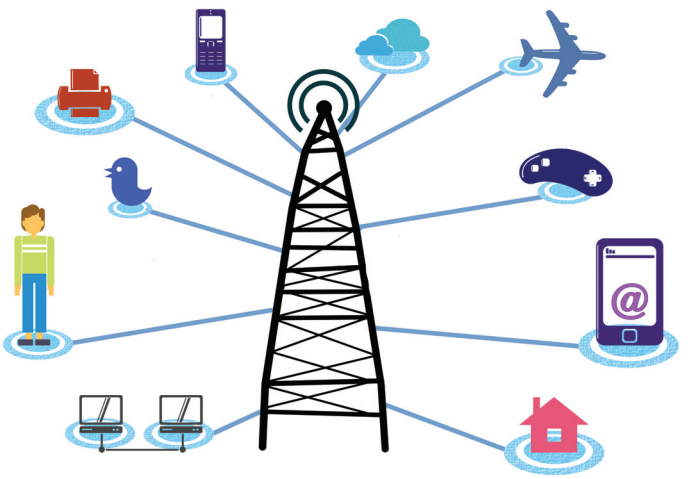

Ⅰ. 사이버권리침해 개관



본 장은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권리침해의 주요 유형별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개념 및 특성
2. 유형별 구성요건
1) 사이버명예훼손
2) 모욕
3) 사이버성폭력
4) 사이버스토킹
5) 초상권 침해

Ⅰ. 사이버권리침해 개관



1. 개념 및 특성

(1) 사이버권리침해의 정의

'사이버공간'이라함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번져나가는 정보세계, 즉 정보화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물질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을 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의 급격한 발전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인터넷환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이버공간 활용을 통한 삶의 모습은 더욱 빨리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은 국경·인종·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가상광장이며 온갖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수많은 정보이용자들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제공·전달하고 공유하게 됨으로써 정치·경제·사

회 ·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정치적 활동 또는 사회적 메시지 전달은 이미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 카페 · 블로그 등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주요수단을 통해 명예훼손 · 모욕 · 성폭력 · 스토킹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기능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의 주요한 유형에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공연히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의 언급 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욕설 등을 행하는 모욕, 인터넷상에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몰래카메라 등 음란물을 유통시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사이버스토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이버권리침해의 특징

① 빠른 피해확산

사이버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정보가 유통되면 그 정보가 어디로 퍼져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 요구 등의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한 정보를 발견하여 모두 삭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익명성에 기대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③ 가해자의 확대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댓글과 불법정보의 퍼나르기 행위로 인하여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로 누구나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스크랩할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게시글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타인의 게시글의 내용만을 믿고 다수의 사람이 한사람을 공격하는, 이른바 '마녀사냥' 식의 현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이버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판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유형별 구성요건

1) 사이버명예훼손

(1)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인터넷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고, 형법에 일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보다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 공공기관 ·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립요건

① 명예의 의의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외적 명예, 즉 개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명예의 주체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명예의 향유주체로 자연인, 법인, 사자(死者)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자의 명예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승인되어 사회적 ·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 · 노조 · 병원 · 종교

단체나 종친회 · 향우회도 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나요?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가해자의 '고의'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이며,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라도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④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의 편지나, 저주성 글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 · 주장 · 발설 ·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진위여부는 명예훼손의 결정에 있어 중요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그 형량이 가중됩니다.

⑤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에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개인의 명예와 충돌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오로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형법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의 게재나 유통 또는 TV ·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배제됩니다.

한편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아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더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⑦ 반의사불벌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의미하고 사이버명예훼손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유형

다음은 사이버명예훼손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①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사 례

OO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②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 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③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사 례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제가 OO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OO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2) 모욕

일반적으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나쁜 놈' 이나 '얼빠진 놈' 등의 표현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달리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공개된 게시판 등에 구체적 사실적시 없이 저속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1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 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보호법익이 '명예' 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모욕행위를 모욕죄로 공소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형 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사이버성폭력

(1) 개념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문자·음향·동영상·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성적인 내용의 문자·음향·동영상·이미지를 보내는 등 일방적으로 성적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시각, 언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위협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사이버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촬영물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가중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유형

① 언어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에 대한 성적 욕설이나 컴퓨터를 통한 섹스행위를 문자로 올리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적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적 성폭력은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은 영상이나 음향, 합성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다른 사이버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켜 타인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성적 사이버스토킹

성적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상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 – 사이버성폭력 대응방법

- 상대가 사이버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상대에게 사이버성폭력 행위임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E-mail, 화면캡쳐 파일 등을 날짜와 시간과 함께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 상대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내는 E-mail이나 쪽지가 더 이상 수신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합니다.
- 상대의 행위가 사이버성폭력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관할 경찰서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집된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스토킹

(1) 개념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 반복적 ·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 -'반복적'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회를 의미하나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시간적 계속의 정도는 상대방의 상태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될 것입니다.

(2) 유형

사이버스토킹의 유형을 분류하면, ① 연인 집착형 : 헤어진 이성친구에 의한 스토킹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식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경우, ② 인터넷 게시형 : 미니홈피를 통한 익명의 스토킹으로써 피해자와 연관된 미니홈피, 카페 등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정보를 연속해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③ 지속적인 연락형 :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한 스토킹으로써 사이버성폭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 초상권 침해

(1) 개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합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 등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격권으로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헌 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초상권의 주체인 피해자가 사진 또는 영상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도 허락된 내용을 넘어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보도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광고용으로 사진을 촬영했으나 광고 수단이 애초에 약속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비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 때에는 사이버성폭력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나, 외모에 대한 비하 또는 성적 수치심과 관련이 없는 사진의 공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 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예전에 N포털 OO카페에 친목도모를 위해 올렸었던 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포토샵한 후, 본인 동의 없이 OO카페에 해당 사진을 올림으로써 제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도 "네 사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올렸다 지웠다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아이디도 바꿔가면서 사진을 올리는 등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 등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Ⅱ. 사이버권리침해 주요 사례



본 장은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성폭력 및 스토킹, 초상권 침해 등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권리침해의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쉽게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사이버명예훼손
2. 모욕
3. 사이버성폭력 및 스토킹
4. 초상권 침해 등

Ⅱ. 사이버권리침해 주요 사례

1. 사이버명예훼손

1-1 **포털사이트 ○○ 카페「□□□ 취업이민」게시판에서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신청유형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이민자이고, 포털사이트 ○○카페「□□□ 취업이민」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인은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취업비자와 고용주와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당 카페 운영자인 피신청인 B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해당 카페의 게시판에 어떤 회원이 올린 질문에 대하여 답변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데, 이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냈던 위 전자우편 내용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를 확인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해당정보의 삭제를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정보는 피신청인이 ○○카페「□□□ 취업이민」의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고, 이 게시글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전자우편의 내용은 현지에서 △△△이 운영하는 회사에 신청인이 취업하여 근무하며 겪은 불합리한 차별, 취업비자 및 고용주와 관련한 갈등,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취했던 노력 등 개인적 사생활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해당정보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후 이 사건 해당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2 본인의 실명과 함께 운영하는 중고차 사업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신청유형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개요

중고차를 매입한 피신청인 B가 허위매물 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인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신청인의 실명 및 사업장을 명시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사업장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권리를 침해하였고 또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해당 정보의 삭제와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해 피신청인 B가 중고차 판매사이트 '□□□' 내 '허위매물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청인 A의 실명과 신청인 A의 사업장 '▲▲▲'을 적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게시글에는 '허위매물', '알고보니 침수차' 등의 표현과 신청인의 성명, 주소, 사업장명,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적시하였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본 조정사건의 게시글에서 허위매물, 침수차 등의 표현으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점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감의 의사를 표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 조정사건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3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비방성 글로 업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가 심합니다.

신청유형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가 자신의 블로그에 신청인 A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업체 □□□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면서 업체의 이미지 훼손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해 피신청인 B가 N포털 자신의 블로그에 '소비자 우롱하는 □□□'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N포털에서 '□□□'으로 업체명 검색 결과, 해당 정보는 블로그 검색결과에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게시글 내용에는 신청인이 말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 구매 및 수선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 조정사건 해당 게시글을 포함하여 신청인 의류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인터넷 등에 본 조정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4 여권사진을 촬영한 사진관에서 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신청유형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해외 거주자로서 일시 귀국하여 피신청인 B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소셜커머스 사이트 □□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튜디오 상품판매에 신청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관련 사진 삭제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신청인의 사진이 게시된 스튜디오 상품 패키지는 신청인이 이를 인지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 □□에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대체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계약서 확인 결과,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증명사진을 광고에 이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술(유선 가능) 및 서면(전자우편 가능)의 방법으로 유감의 의사를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본 조정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사진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될 경우, 피신청인이 삭제하거나 삭제 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취하는 등 위의 사진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 피신청인은 제2항의 목적으로 본 조정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칠십만원(₩700,000)을 본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5 한의사인 저를 마치 무면허 의사인 것처럼 블로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신청유형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자신의 치료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무면허 한의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의원 내원 당시 벽에 한의사 면허증이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과 다른 한의원과의 진료내용 비교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해당정보의 삭제와 상대방으로부터의 사과를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해당 게시글에서 '▲▲한의원 가봤더니… 벽에 한의사 자격증도 걸려 있지 않고… 암튼 다른 한의원에 비해 너무 대충대충 진료하던데요. 다음에는 꼭 자격증이 있는 한의원에 가려구요.'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상태가 아닌 전체공개가 된 경우에는 타 이용자가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한다(사과의 방법은 유선상 통화 및 해당 카페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후 해당 게시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6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대상 이용자의 닉네임 '▲▲▲'가 자신의 블로그에 청구인의 실명과 재직중인 학교명, 지위 등을 적시하며, 허위사실과 욕설을 게재함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대상 이용자의 닉네임 '▲▲▲'가 자신의 블로그에 '□□대학교 축구부 ○○○ 감독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시글에 '피땀흘리면서 자식을 뒷바라지 하는 학부모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돈이나 뜯어쓰는 파렴치한 인간', '당신같은 지도자는 영원히 파멸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청구인이 마치 학생의 돈을 갈취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 및 가치를 저하시켜 청구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가려볼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7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포털사이트 성형 관련카페의 게시판에서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D포털 카페 「▲▲성형」 내 게시판 및 다음 통합 검색에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청구인의 병원영업을 방해하는 게시정보가 검색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하여 D포털 카페 「▲▲성형」에 접속한 결과, 청구대상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카페는 2××× 년 경에 개설된 커뮤니티로 회원수가 대략 5만여 명임을 확인하였다.

청구대상 이용자의 '■■■' 명의로 작성된 '○○동 □□□성형외과 ○○○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카페 한 회원의 경우 귀하의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 후 그 부작용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중략)…귀 병원의 의료진들이 수술 후에 …(중략)…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수술 전에 수술 받으려고 하는 그 회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가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해당 게시글이 특정 회원의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병원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청구인의 병원명을 적시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8 제가 운영하는 음반제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어떤 자가 개인 블로그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음악파일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유료로 제공하는 음반제작사이다. 청구인은 청구대상 이용자의 닉네임 '○○○○'(「△△△△ ○○○○」 블로그 운영자)가 청구인의 회사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N포털, Y포털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유포시킴으로써, 청구인 등 관계자 모두를 모욕하였음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을 통하여, '음악카페에 다량 가입하여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략) …혹여 운영하시는 카페나 블로그에 접근중이면 강퇴시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터무니 없는 합의금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고 현재 몇분은 고소당하시어 경찰서에서 조사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라고 하며 청구인이 가입한 카페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로, 상기한 소명자료에 게시된 '..♡□□의 영화음악♡..', '□MP3□ 노래■■ 공유 Box', '○○○카페' 등 나열된 수십 개의 카페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카페의 목록이므로 해킹을 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는 N포털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해당 게시글에서 청구인의 회사명(▲▲▲ 주식회사)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청구인이 가입한 카페명을 적시하고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 청구인의 강퇴를 당부하는 내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게시글 내용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9 제 아이디와 유사한 아이디로 온갖 욕설과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가 평소에 청구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청구인이 즐겨 방문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포털 게시판에 온갖 욕설과 험담, 지역감정 조장, 상대방 비하 글을 올려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하여 ●●포털 게시판에 청구대상 아이디 '▲▲▲'가 작성한 게시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대상 아이디 '▲▲▲'에 의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불륜 ×××들의 자기 합리화' 등의 내용이, '××찐따 ××'라는 제목으로 ○○○ 전 대통령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증명서」와 「민원회신」 제목의 □□본부 발행 문서' 등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게시글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욕설 등이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기각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대상 이용자가 청구인의 아이디와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욕설과 험담, 지역감정 조장, 상대방 인격비하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판내의 청구인의 평판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가 유사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청구인과 청구대상 이용자를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 및 가치를 저하시켜 청구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1-10 회사에 대한 불만을 회사직원과 메신저로 얘기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신청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상담내용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직원과 메신저로 1:1(일대일) 대화를 하다가 상대 직원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약간의 욕설로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몇 달간 임금체불을 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더니 메신저에서 제가 사장님 험담을 한 내용을 보았다며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임금은 줄 수 없다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모두 공연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담인이 회사직원과 1:1 메신저로 회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 대화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전파성 이론에 근거하여 공연성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담인과 회사직원의 1:1 메신저를 우연히 누가 보고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 뿐이라면 전파성의 이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모욕

2-1 인터넷 쇼핑몰 고객상담 코너에 욕설과 협박성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신청유형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개요

신청인 A는 인터넷 쇼핑몰 △△△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피신청인 B가 △△△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의 홈페이지 [1:1(일대일) 고객상담] 게시판에 협박과 욕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사과 및 쇼핑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피신청인이 더 이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사건 게시물은 쇼핑몰 △△△의 [1:1 고객상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작성자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이 첨부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사건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사건의 해당 게시글은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쇼…' 라는 제목으로 피신청인 명의로 작성되어 '달랑 문구 하나 붙여놓고선 확인 안 했다고 고객책임으로 무는 당신네', '그럼 제품은 X같은거 보내놓고 고객이 확인 안했다고 하면 사기 아닌가!! ○○○, ○○ 카페에 당신네 다 올릴줄 알아! 알겠어… 이 ××××들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 양 당사자는 쌍방간 서로 사과한다.

– 피신청인은 차후 이 사건과 관련한 게시정보를 여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 아니한다.

2-2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심한 욕설과 함께 제 미니 홈피 정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D사이트 갤러리 게시판에 특정 음식 소개에 대한 댓글로 '그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이야' 라는 단순한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청구대상 닉네임 '▲▲▲'가 인격 모독성 댓글과 욕설을 작성하였다. 또한, 동일 게시판 내에 있던 청구인의 신상정보(실명, 미니홈피 등)를 게시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청구대상 닉네임 '▲▲▲'가 작성한 '아 ×× 요리를 너무 얕봤어'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게시글에서 특정 음식 요리법에 대한 소개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댓글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댓글이 작성된 이후 청구대상 닉네임 '▲▲▲'가 청구인의 실명과 개인홈피 사진을 수차례 게재하면서 '×××장애인', '×××이 사기나 치고 다니고 ×××새끼야' 등의 욕설을 게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대상 닉네임 '▲▲▲'가 작성한 댓글의 표현수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댓글과는 별도의 게시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청구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가려볼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3 익명의 이용자가 근거없이 저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이 ○○○클럽 '□□대학교 △△캠퍼스' 게시판에 작성한 교내 스터디 그룹을 모집한다는 글에 대해 익명의 게시자가 청구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학력위조' 등을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하여 ○○○클럽 '□□대학교 △△캠퍼스'의 익명 게시판 내에 청구인의 실명으로 '▲▲▲ 저 ××놈…'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게시글 내용에서는 '미친놈', '강의를 돈주고 사냐 ××놈아', '학력위조했네'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익명의 이용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대상 '익명' 게시자가 작성한 표현 및 수위를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교내에서 청구인의 평가를 저해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4 제 블로그에 작성한 영화 감상평에 욕설 댓글을 올렸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신의 N포털 블로그 '○○○의 □□□'에 영화 '☆☆☆'에 대한 감상평을 올렸는데, 청구대상 아이디 '▲▲▲'가 악성 댓글을 올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하여 청구인의 블로그 '○○○의 □□□' 내 문제 게시글에 청구대상 아이디 '▲▲▲'가 '○○○ 닥쳐 개새○ㅋㅋㅋ 니 면상이 울컥하다 보면 ××× 갈기고 ◆◆ 쳐밟고 후려쳐버리고 싶네', '동반자살해'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대상 이용자 댓글의 표현수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가려볼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5 ○○사이트에 제 사진과 함께 폭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이트 이용자로서 해당 사이트의 동호회 정기모임에 참석한 후, 청구대상 닉네임 '▲▲▲'가 동호회 모임에서 찍힌 청구인의 사진을 게시하며 폭언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모욕하고 비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대상 이용자 '▲▲▲'가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총 17개의 게시글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게시글 대부분이 청구인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게시글에 '××같은 면상', '××새끼' 등의 저속적인 표현과 함께 부모에 관한 욕설 등을 적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폭언에 가까운 욕설을 게재한 것은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 및 가치를 저하시켜 청구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가려볼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6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N포털 카페 「□□□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회원이다. 해당 카페 내 [●● 회원] 게시판서 청구인의 사진에 대해 청구대상 아이디 '◆◆◆'이 악성 댓글을 게시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N포털 카페 「□□□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접속한 결과, 청구인이 게시한 사진 및 청구대상 아이디 '◆◆◆'이 작성한 악성 댓글이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댓글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 제로'라는 게시글에 대한 내용으로, '더럽게 못생겼네', '니얼굴 X도 ××같잖아' 'ㅋㅋ이 ×× 가만보니까 나중엔…(중략)…라고 할 ××네—ㅋㅋ" 등의 표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대상 아이디 '▲▲▲'가 작성한 댓글 및 청구인에게 보낸 쪽지에서 '더럽게 못생겼네', '니 얼굴 X도 ××같잖아' 등 욕설과 함께 청구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7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영화 시사회권을 주고 받는 등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그런데 특정 회원 몇몇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대상 아이디 'ㅇㅇㅇ', 'ㅁㅁㅁ'은 N포털 모 영화 동호회 카페에서 시사회권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자이다. 청구인은 해당 게시판에서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이디 'ㅇㅇㅇ', 'ㅁㅁㅁ'이 청구인을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면서 '사기꾼', '블랙'이라고 지칭하는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하였다.

사실조사

해당 카페에 접속한 결과,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ㅇㅇㅇ' 및 'ㅁㅁㅁ' 명의로 작성된 댓글은 현재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당 게시판에서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ㅇㅇㅇ' 명의로 2××× 년 ×월 ×일자로 작성된 '요즘 ㅁㅁ터 ㅠㅜ'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현재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게시글에서 '어째서 ■■같은 성격파탄자랑 사귀어줄까나 ㅋㅋㅋ', '■■이 성격파탄자 라고 생각드시면 추천수 한번 눌러주세요', '저런 사기꾼이 이런 ㅁㅁ터 물을 흐리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야겠나요?'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및 기각

결정이유

아이디 'ㅇㅇㅇ'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에서 청구인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정보제공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아이디 'ㅁㅁㅁ' 명의의 작성된 게시글 및 댓글에서 청구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2-8 피해체험담에 대해 청구대상 이용자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년여 전에 유료 채팅사이트 '○○○'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를 보았고, 이와 같은 유료 채팅사이트들의 소비자 기망행위를 널리 알리고자, 피해 다음날 이에 대한 피해체험담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청구대상 이용자 '▲▲▲', '●●●'가 모욕적인 댓글을 올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N포털 ○○게시판 내 '이야기' 카테고리 내에 청구인이 유료 채팅사이트에 무료가입 하였다가 대화 및 쪽지 등에 응답하기 위해 유료 결제를 하였는데 지속적인 결제를 유도하는 등 상술에 속았다는 내용의 경험담을 적시한 게시글을 확인하였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청구대상 이용자 '▲▲▲'가 '결국 너도 ○○○해보려고 가입한거 아니냐'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대상 이용자 '●●●'가 '여기서 ×× 한 마리의 최후를 보네요'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대상 이용자는 청구인이 작성한 소비자 피해 고발성 게시글에 대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 바, 이는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 및 가치를 저하시켜 청구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사법적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9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신청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상담내용

게임 이용 중에 지나치게 모욕감이 드는 말을 들었습니다. '니 XX 검은색', '걸레XX년', '너 ○○에게 준거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피해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니셜이나 두문자 등을 사용하거나, 지역·연고·소속 등을 한정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의 ID나 닉네임만 드러나 있는 경우, ID나 닉네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ID나 닉네임에 대한 적시만 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추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특정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2007헌마461)
그러므로 ID나 닉네임만 있는 때에는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본인을 특정하는 것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임내 본인 ID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이 있을 경우, 우선 해당 게임사이트 고객센터로 신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욕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10 욕설과 함께 제 이름이 공개된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신청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상담내용

선생님과 친구들이 볼 수 있는 학교 게시판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공개하며 저에 대한 욕설('○○같은 새끼')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답변내용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학교 게시판에 일부러 학생을 특정하여 심한 욕설을 실명과 함께 올렸고, 그 글로 인해 피해 학생이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모욕에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먼저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선생님 등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글의 화면을 캡처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 신고된 정보가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정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이버성폭력 및 스토킹

3-1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성적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게임의 「□□의 나라」라는 게임 이용자이다. 해당 게임의 공개 채팅창을 통해 청구대상 닉네임 '▲▲▲'가 청구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수차례 적시하면서 청구인을 모욕하고 비방하였으므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대상 닉네임 '▲▲▲'이 청구인에 대해 적시한 내용 중, '○○가 술집서 ▽▽▽▽ 강간함', '너 불꽃축제 할때 ▲▲랑 둘이 데이트했다며 ㅋ', '바람갑부남자한테 환장한년', '○○한테 차인년 ㅋㅋㅋㅋㅋ', '만나서 함대주게?' 등의 저속적인 표현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채팅은 해당 게임의 진행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팅과 달리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개된 채팅을 통해 청구대상 닉네임 '▲▲▲'가 청구인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가 술집서 ▽▽▽▽ 강간함', '바람갑부남자한테 환장한 년', '만나서 함 대주게?' 등 악의적 표현으로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2 ○○카페에서 제 성씨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정신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신청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대상 이용자의 닉네임 '▲▲▲'가 ○○ 종교 카페에서 청구인을 특정 동물로 은유하여 표현하면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함에 따라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가 위치한 D포털 종교 카페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청구대상 이용자의 닉네임 '▲▲▲'가 청구인의 성씨를 빗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카페에서 청구대상 이용자의 닉네임 '▲▲▲'가 '찬양하고 피아노치는 그녀 꿈을 꾸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는 '이 여자가 얼마나 선동을 잘하는지…' 등의 내용이 적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대상 이용자의 닉네임 '▲▲▲'가 작성한 게시글의 은유적 성 표현은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 및 가치를 저하시켜 청구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사법적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3 쪽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합니다.

신청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상담내용

온라인 게임 중에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반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듣기 싫어 로그아웃을 했는데, 이후 끊임없이 욕설로 된 쪽지를 보내고 있으며 점점 도를 넘어 부모님과 주변사람들까지 욕하고 있어 괴롭습니다.

답변내용

욕설 등과 같은 경멸 표현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쪽지의 경우, 1:1 통신으로써 쪽지를 주고 받은 본인과 상대방 외에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74조)

그런 만큼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내고 이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4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위협적인 글을 올려요.

신청유형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상담내용

얼마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전 남자친구가 제 미니홈피와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게시판에 제가 작성해 올린 글마다 '더러운 XX같은 ○○',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두고보자' 등의 댓글을 계속 남겨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전 남자친구는 고의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이버스토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스토킹을 당하면 실생활에서의 스토킹 못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게시판에서 당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인터넷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를 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초상권 침해 등

4-1 제 눈썹 시술 전·후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어요.

사건유형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가 운영하는 「○○○○메이크업」 홈페이지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시술 전·후 사진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게시함으로써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크다고 주장하면서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취지로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신청인은 「○○○○메이크업」에서 눈썹시술을 받은 후에 친구에게도 소개해 주었는데, 「○○○○메이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사진이 약 두 달 동안 무려 4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친구가 알려주어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피신청인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고객들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게 된 것이었는데, 얼굴 전체가 아닌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게시된 사진만으로 신청인임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400만원의 손해배상은 과다하며 시술비용의 환불만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오십만원(₩500,000)을 지급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후 이 사건 해당정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2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본인 회사의 신용훼손, 주가하락 등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건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가 2년여 전에 끝난 청구인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사글을 게시하여 청구인의 회사가 현재 심각한 경영난 등에 처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주식시장에서의 악성루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들의 문의전화로 인한 정상업무 수행 불가 등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를 위해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사건정보의 위치를 통하여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의 N포털 블로그 「□□□□」 내 '주식재테크'란에 '□□□ 회사의 희망퇴직 80명 노동자 희생인가? 회사 위한 자구책인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에 위치한 중견기업 □□□가 지난 O월 O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경제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희망퇴직자들과 회사 자구책이라는 회사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가 해당 원문 기사의 작성 시간이나 기사의 출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의 내용을 현재의 청구인 상황으로 오인할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청구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을 통해 청구대상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 여부의 판단 및 청구인의 손해발생 여부, 그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3 스마트폰 SNS에서 연예인인 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유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개요

청구대상 이용자 아이디 '●●●'가 스마트폰용 SNS 애플리케이션 '□□□□'에서 연예인인 청구인을 사칭하여 활동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하였다.

사실조사

청구대상 이용자 아이디 '●●●'가 스마트폰용 SNS 애플리케이션 '□□□□'에서 청구인의 사진과 함께, 청구인이 운영중인 인터넷 쇼핑몰 '▲▲▲'를 적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시글에 청구인의 사진과 함께 '날씨 정말 춥죠?', '요즘은 시간이 천천히 가기만 바랄 뿐…', '▲▲▲ 사이트 홍보 촬영날' 등 청구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청구인의 동료 연예인에게 청구인인 것처럼 쪽지를 보내는 등 청구인 행세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결과

정보제공 결정

결정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프로필 소개에 청구인의 사진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를 적시하고 게시글에도 청구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글을 남겨, 이러한 게시글을 본 이용자들이 청구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아 청구인의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법적 절차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Ⅲ.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



본 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입장에서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 구제 및 대응 가이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1. 피해 예방 가이드
2. 가해 예방 가이드
3. 피해 구제 및 대응 안내
   1)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안내
   2) 피해구제 방법 안내
4. 자주 묻는 질문(FAQ)

Ⅲ.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이 일상생활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통신 인프라와 함께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인터넷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이버권리침해로 상처를 주고받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의 특성상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본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장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에서 위에서 언급한 권리침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 예방 가이드

사이버권리침해는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하여 그 피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아무리 빨리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엎어진 물처럼 피해에서 벗어나기 몹시 어렵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디나 닉네임은 중성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상대방을 추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나 닉네임을 성별을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경우, 의도치 않게 사이버권리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나 닉네임을 만들 때에는 성별을 추측하기 어려운 중성적인 형태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정보의 노출에 유의합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물론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나 글 등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이 관리하는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애초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관련 서비스의 기본설정이 공개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개 · 비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이버권리침해뿐만 아니라 2차적인 강력범죄 등에도 이용될 수 있어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의 사생활 정보를 잘 관리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함께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뿐 아니라 알고 지내는 사람의 많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 이러한 사생

활 정보가 그대로 타인에게 노출될 수가 있고,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생활 정보가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등을 설정해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낯선 이성 간 화상채팅에 주의합니다.

최근 이성 간 화상채팅 중 자신의 얼굴과 몸 일부분을 찍어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겠다며 위협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이나 화상채팅에서는 서로 금방 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상대방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 쉽게 동영상 촬영 등에 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전송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를 저장했다가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낯선 이성간 화상채팅 시 몸의 일부분을 찍어서 보내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5)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쪽지, 메신저 등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쪽지, 메신저 등의 통신수단은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판과는 달리 일대일(1:1) 통신으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단에 비하여 비교적 일시적이고 휘발적인 특성이 있어, 더욱 은밀하고 자극적인 표현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단호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한편, 메일이나 쪽지, 메신저 등의 서비스에는 대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을 계속 보내는 발신자에 대해서는 수신 거부를 설정하여 이러한 피해 상황에 노출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6)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다고 생각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고, 음란한 대화방으로 초대되었을 때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수로 또는 호기심으로라도 음란한 대화방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대화방에서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때 반응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은 이러한 반응을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유혹하는 때에는 절대로 반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7)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니다.

온라인 동호회나 카페모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득이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야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2. 가해 예방 가이드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신의 실명이나 신분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직접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대화나 토론이 논쟁이 될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에 즉흥적인 댓글이나 답변은 서로에 대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모욕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논쟁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글이나 이모티콘(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또는 간단한 자음·모음으로만 표현을 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을 오해하기 쉽고, 감정의 조절도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벌어질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근거 없는 비방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장난삼아 게시글을 쓰거나 댓글을 쉽게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일이 커져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를 수습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 등을 단순히 재미로 게시하였다가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거 없

는 악성 루머 등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등의 댓글을 다는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3)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던 중,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앙되는 경우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여 상처를 주거나 받아서 후회해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서 올릴 때에는 자신이 쓴 글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읽어본 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쓴 글 내용에서 부정확한 내용은 없는지, 혹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올리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논쟁 시 은어나 비속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은어나 비속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지만, 지나친 경우 소통의 장벽이 되거나, 사소한 오해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오류를 지적할 때 논리적 설명이나 근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ㅋㅋ', 'ㅂㅅ' 등과 같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축약형 용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논쟁은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인격 모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말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습관이 필요합니다.

(5) 비판받을 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비방은 자제합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회자됩니다. 뉴스, 공개토론장, 인터넷방송, SNS 등을 통해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전파됩니다. 이러한 것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의 해결책에 대한 토론문화를 형성하는 긍

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비판보다는 욕설 등을 사용해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가 다수에 의해 이뤄지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처럼 형성된 토론 분위기가 망가지는 결과도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비판을 받을 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6) 욕설 등이 포함된 아이디 ·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욕설이나 음란한 용어가 포함된 아이디(또는 닉네임)를 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욕설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보는 상대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이나 채팅 등의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덧붙여 대부분 사이트가 이러한 불량(음란, 폭력, 욕설 등) 아이디에 대해서는 이용제재를 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7)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니다.

인터넷은 결코 현실에서 동떨어진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에서 사이버공간이 역시 또 하나의 현실적인 공간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접촉하는 상대방도 결국은 나와 같은 실제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여 이에 맞는 행동양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정리

피해예방 가이드

(1) 아이디나 닉네임은 중성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2) 개인정보의 노출에 유의합니다.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의 사생활 정보를 잘 관리합니다.
(4) 낯선 이성 간 화상채팅에 주의합니다.
(5)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쪽지, 메신저 등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6)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니다.

가해예방 가이드

(1) 대화나 토론이 논쟁이 될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2) 근거 없는 비방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3)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 논쟁 시 은어나 비속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합니다.
(5) 비판받을 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비방은 자제합니다.
(6) 욕설 등이 포함된 아이디 ·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7)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니다.



3. 피해 구제 및 대응 안내

사이버공간에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방법과 신속하게 신고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 사이버 권리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에 대응하는 방법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은 전화, 방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먼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 [전자민원] 메뉴를 선택하여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이용 안내'를 참고하신 후, '상담신청'에 들어가셔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피해를 당하신 내용, 해당 게시글 주소(URL) 및 관련 증거 파일(화면 캡처 스크린 샷 등)을 함께 첨부하여 등록해주시면,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상담을 신청하시기 전에 'FAQ(자주 묻는 질문)'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려놓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FAQ'를 참고하신 다음 질문을 하신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전화 상담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홈페이지의 메뉴 중 '방문예약'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2) 피해구제 방법 안내

(1) 사이버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청**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이 게재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신고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임시조치는 일정 기간(30일 이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게시되는 등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다른 절차를 통한 대응보다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권리침해 정보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침해의 신고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통신민원]의 '권리침해 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일상생활 중에서도 타인과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여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전 절차로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끔 하는 민사상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는 법원이 아닌 우리 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하여 진행되는 민사상 조정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는 일종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의 정보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법원 등 사법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의 분쟁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내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때에는 피신청인의 이름, 연락처(이메일 등)와 함께 명예훼손 사실 및 관련

게시글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확인을 한 후 조정기일을 정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게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 메뉴 내 '분쟁민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가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제도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에 따른 제도로서,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의 청구를 우리 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하게 됩니다. 청구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정보제공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요청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반드시 민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목적, 이를테면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용자의 정보의 제공 청구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 메뉴 내 '정보제공청구'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컴퓨터 화면 캡처하기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방법 중 어떠한 절차를 거치시더라도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오프라인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제가 되는 화면을 캡처한 그림파일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다수 프로그램이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프로그램이 없이도 기본적인 컴퓨터 이용 환경에서 증거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캡처하고 싶은 화면을 큰 창으로 화면에 펼쳐 놓습니다.

② 키보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F12]키 오른쪽에 있는 

[Prt Sc / Sys Rq]키를 한 번 누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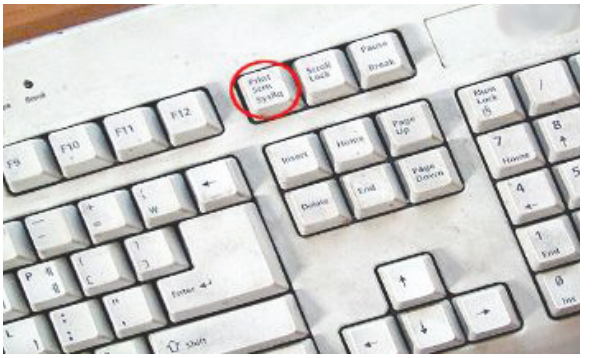

③ 이때 화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컴퓨터 내 가상 메모리에는 이미지가 저장된 상태입니다.

④ 이 상태에서 다른 키는 건드리지 마시고 마우스로 화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시작]을 누르신 후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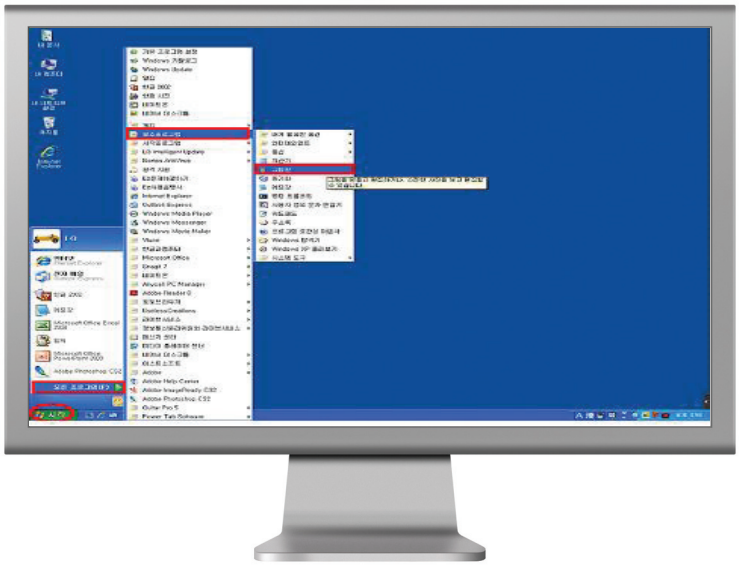

⑤ 그림판 화면 상단의 메뉴 중 [편집]을 클릭하시고 그 중 '붙여 넣기'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저장하고자 했던 화면 그림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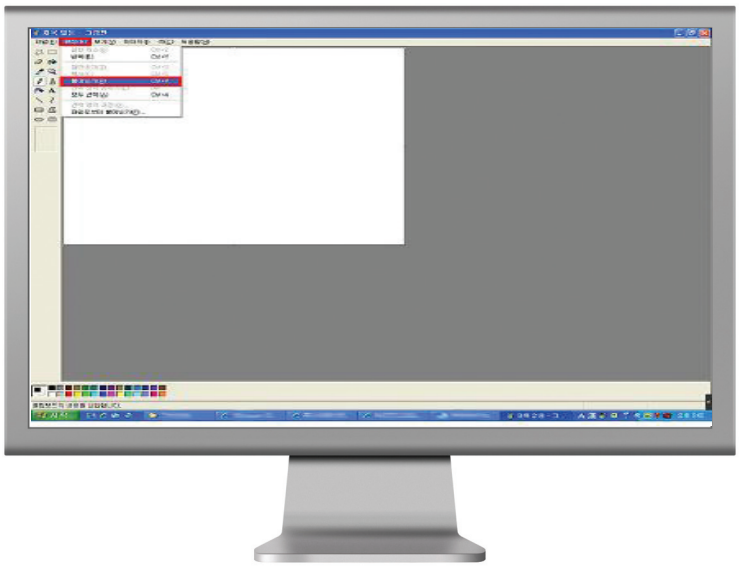

⑥ 이제 캡처한 화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 [파일]을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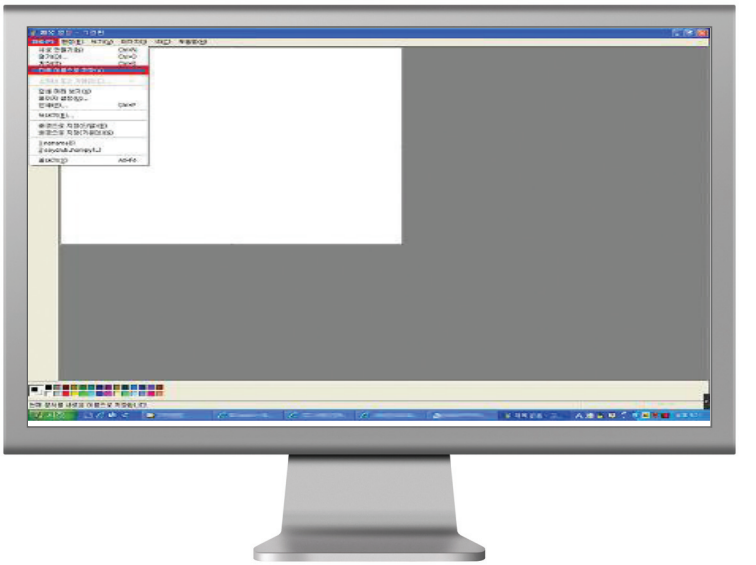

⑦ 이제 화면을 캡처한 파일의 이름을 '파일 이름(N)' 에 기재하시고, '파일 형식(T)' 에서 JPEG(*.JPG;*.JPEG;*.JPE;*.JFIF 등)을 선택합니다. 다 완료되시면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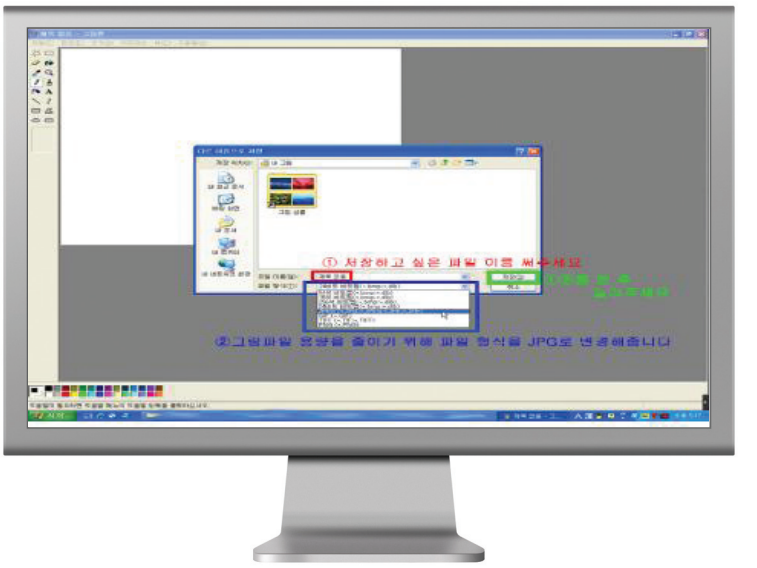

⑧ 이제 화면 캡처와 저장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장하신 파일은 [내 문서] 폴더 내 [내 그림] 폴더에 있습니다.

증거자료 화면 캡처할 때 유의사항

-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캡처하시는 때에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전체화면으로 합니다.
- 캡처 화면이 어느 사이트 어느 공간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URL)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 내용이 길어서 한 번에 보이지 않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잘 구분하여 나누어 캡처합니다. 이때에도 해당 인터넷 주소(URL)가 보이도록 전체화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어떤 일을 하며,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설립근거를 둔 합의체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같은 법률 제44조의6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쟁조정부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입니다.

2. 누가 어떤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권리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란 신청인이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kocsc.or.kr)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조정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조정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 당사자가 합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상 화해의 효력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7. 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조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사과 등이 있습니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8.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때에는 당연히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6에 따라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라고 합니다.

10.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도로 구할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민형사상 소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게시글 작성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입니다.

11. 정보제공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의 방법으로 정보제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란 신청인이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kocsc.or.kr)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정보제공청구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 조정부에 정보제공청구가 접수되면 조정부는 첨부된 소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제공결정을 하게 되면 조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요청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면 정보제공청구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13. 정보제공청구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정보제공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발송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정보제공통지서를 발송합니다.

14. 제공된 정보를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정보는 절대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Ⅳ. 판례 및 관계법령 등



본 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판례 및 관계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판례
2. 관계법령
3. 주요 관련 기관
4. 찾아오시는 길

Ⅳ. 판례 및 관계법령 등

1. 주요판례

(1) 명예훼손 관련

가. 권리 침해 피해자의 특정에 대한 판단

1)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 2008.6.26. 2007헌마461 결정】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와 관련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이디(ID)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진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 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였음

판시 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반대의견** :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 · 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나. 비방의 목적 또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판단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판결】

사건 개요

○○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2003. 1. 10.경 인터넷 사이트의 '○○여고□ □학생 살리기 모임'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학교 충주분교에서 개최된 참교육실천보고대회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의 □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참석자들로부터 □ □학생을 살리자는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하였음

판시 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문제된 표현이 전체 글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 게재 동기와 시기,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학교의 ㅁㅁ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II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판시 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와의 관계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비방의 목적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피해자에 대한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로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나?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을 게시하였음

판시 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 방법

[2]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 이유

구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연성(전파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

1) 비공개 대화방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이라고 한다)와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이하 URL 생략)에서 일대일로 비밀 대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안

판시 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재판 요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2) 공동의 관심사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6.2.15. 선고 2005나62190 판결】

사건 개요

원고 K사는 대형 상가를 신축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했고, 피고들은 위 건물 중 상가 4층의 1구좌씩을 각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원고의 초과 분양 여부가 문제가 되자, 수분양자들은 2002.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2002. 12. 7.경 수분양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피고 중 1인이 위 사이트의 관리인으로도 활동하였고, 피고들은 2004. 6. 2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에 추가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것은 불법이고 사기이다, 협상가격이 우습기 짝이 없다는 등 원고가 수분양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들은 2004. 9.경 대통령비서실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초과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조치 및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판결 이유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현실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삼는 수분양자들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글을 읽거나 게재 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상담을 받을 당시 교부받은 매장평면도와 준공 후의 매장평면도가 달라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로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2003. 11. 18.경 일간신문에는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입점한다고 광고된 ㅁㅁㅁㅁ학원과 관련하여 분양사기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수분양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할 것이며, 청와대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자신들의 권리보호를 위함이었을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실의 적시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0.2.25. 선고 98도2188 판결】

판시 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4]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재판 요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

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4]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2)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07 판결】

판시 사항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에 게시된 시(詩) 중 일부 내용이 일반 독자에게 그 표현 자체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명예에 관련된 사실이라고 본 사례

판결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어떠한 글(詩)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풍자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또는 풍자를 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글이 게시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시(詩) 중 '민생법안이 널려 있어도 / 국회에 앉아 있으면 하품만 하는 년이지 / 아니지 국회 출석율 꼴지이지' 라는 내용은 일반 독자에게 그 표현 자체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명예에 관련된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詩)의 전체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표현은 그 허용의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과 의견의 구별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1356 판결】

판시 사항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2]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3]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필요성과 구별 기준

재판 요지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2]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3]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문기사 가운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로 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좇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면 손배책임이 있다는 사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판시 사항

[1]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근거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 요지

[1]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

1)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8.25. 선고 2004가단119260 판결】

사건 개요

피고 교육청의 게시판에는 원고의 견해를 반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올라 왔으며 그 중에는 "한 마디로 똥개네요, 똥개의 하소연, 님 같은 똥개땜시" 등 원고를 "똥개"에 빗대어 비하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댓글이 있었으며, 원고가 2003. 9. 초순경 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여 담당 장학관에게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교육청은 그 삭제를 미루다가 2003. 12. 경 이를 삭제한 사안임

판시 사항

[1]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자인 피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5개월간 방치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적극)

판결 이유

이 사건 댓글 상에는 일반인이 통상 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단어인 '똥개'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님 같은 똥개'라고 직설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더구나 ㅁㅁ교육청 자유게시판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찾아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기에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원고가 ㅁㅁ교육청의 상급기관인 ○○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수개월 동안 삭제하지 아니한 점, 기술적으로 이 사건 댓글만을 삭제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이 사건 댓글의 삭제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댓글을 약 5개월간이나 방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위법하다.

2) 초상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4.19. 선고 2006나8560 판결】

사건 개요

공소외 박○○에 의해 2006. 2. 9. 원고의 얼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에로틱' 란에 게시된 이후, 원고는 2006. 2. 13. 이 사실을 알고 위 사진의 삭제와 박○○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의 홈페이지에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글만을 남기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진은 2006. 3. 6. 원고의 재 요구에 의하여 삭제된 사안임

판결 이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게시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삭제 요구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원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의 공간으로 제공할 뿐 사진의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이 타인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는 2005. 5. 5. 싸이월드 내에 있는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김모씨 로 지칭)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이다" 등의 극언을 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이후 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되고, 서명 운동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란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현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망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망인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으며, 위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글 들을 통해서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들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중의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쉽게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색 서비스의 경우 피고들은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 · 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검색 · 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수의견 :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4) 게시판 관리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판시 사항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재판 요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판시 사항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재판 요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

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5]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사. 종교와 관련한 명예훼손 판단

1) 종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5924 판결】

판시 사항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

[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

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공소외인(대한예수교침례회)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공소외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기재부분은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 ·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소외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기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공소외인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원파는 '성경세미나' 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종교 단체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5.23. 선고 2006노46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단체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법무부 홈페이지 등 다수의 홈페이지에 '공소외 1이 지난 20년간 강간한 여성들의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하고, 건강진단 명목으로 성추행한 것까지 합치면 10만여 명의 여성들이 유린당해왔다(정확한 근거에 의존했음)', '특히 (교단명 생략) 안에서 공소외 1이 짝지어줘서 결혼을 한 3000여 쌍의 축복가정 중에 거의 1/3이 (교단명 생략)탈퇴 후, 이혼과 가정파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원인은 결국 공소외 1과 아내와의 성문제이다. 한 점 보태지 않은 엄연한 사실이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게시함.

판시 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의 '사실' 의 의미 및 위 조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관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실' 이란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진실한 사실,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모두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모욕죄

가. 치과 병원 이용후기와 관련한 게시글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1.8.18. 선고 2011고정769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ㅁㅁㅇ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일어난 일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ㅇㅇ치과 가지마세요」란 제목으로 'ㅇㅇ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기를 낳고 나서부터 이가 많이 시려서 치과를 알아보던 중 △△치과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잘못 검색을 하여 ㅇㅇ오거리 ㅇㅇ치과를 가게되었습니다. 처음 접수시에 직원이 약간 불친절하게 해서 맘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는 과정에 정말 더더욱 불친절한 행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잠시 올려놓았더니, 치위생사가 일언반구도 없이 제 가방을 휙 하니 다른 곳으로 거의 던져버리듯이 치우는 거였습니다. … (중략) … 한바탕 실랑이를 버리다가 원장을 부르는데도 치료한다는 구실로 전혀 얼굴도 안보이더군요. 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조용히 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

네요. 모든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행패부리러 온 사람 취급하면서 말이죠… 원장에게 찾아가니 환자 치료해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참…보통은 원장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상황 수습을 하는게 아닌가요? 원장 소장 치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기다려도 아무 반응 없고,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같아, 접수직원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조금 불친절한 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다고 말하니, 오해인 거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나마 그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이하 원장, 직원입니다. 정말 그것은 가지 마세요. 요즘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치료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판결 이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0. 선고2008도1433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는 '원장 소장 취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직원들에게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지하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위 글에서는 피해자를 '원장'이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아니하면서, 그 중 모욕적인 표현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경험하였던 불친절함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으로 위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욕설, 비방 담은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모욕죄 성립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8351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3. 9. 15.경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소재 공소외 이○○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서 근무하던 자인바,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장 △△새끼 △△△새끼"라는 글을 남겨 놓아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해 10. 15 0:13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주)○○○답변 게시판에, "웬만하면 면접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이며 그 시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 분위기도 별로 안좋고 3개월 수습이지만 3개월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짤립니다. 짤리지 않으면 사장의 욕설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일요일도 나오는 날이 있고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한 9시~10시까지 일할 정도 입니다. 그 회사에서 오래 다닌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거쳐서 갔지만 다들 수습기간에 다 나갔습니다. 그 회사 1년 이상 다닌 사람 한 3~4명 정도입니다. 가지 마시고 다른 회사 가십시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음.

재판 요지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1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대화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의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규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시판 글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을 넘어선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그 게재내용 중 피해자 회사직원의 재직기간이나 피해자 회사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게시판 글의 목적 및 그 적시된 표현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초상권 침해 관련

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출산장면을 인터넷에 모자이크 하지않고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5.29. 선고 2007나9003 판결】

사건 개요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사안임.

판결의 의미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그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장면 게재로 인하여 산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산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촬영자인 산모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이 사건 장면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여 사용한 이상 산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사이트가 공익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 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산모의 초상이 들어간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 미리 산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산모에 대하여 단지 사이트 자체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안에 대한 초상권 침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판시 사항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과 사용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 요지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위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던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이 丙인 것처럼 丙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회통념상 丙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丙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甲도 乙의 사용자로서 乙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丙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사이버 스토킹 관련

가. 스토킹을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10.13. 2011고정3906 판결】

판결 이유

피고인은 2011. 2. 16. 11:32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오C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번호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요 개조빱 같은 놈 봐라 전화 피할라고 없는 번호로 위장해놨네 개양아치야 함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4.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재판 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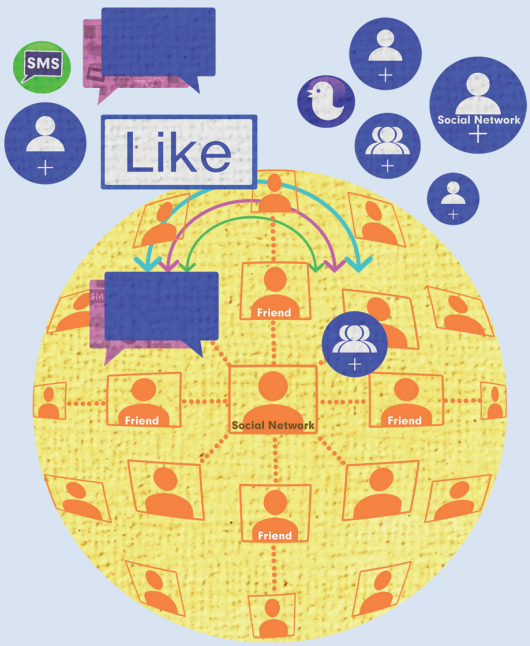

2. 관계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 · 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 교육 ·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9.29〉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형 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민 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시행일 : 2013. 7. 1]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

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6. “온라인 신청”이라 함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무)

①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처리기간의 산정기준)

① 제10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보완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처리기간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제 2 장 분쟁조정

제 1 절 조정신청

제5조(조정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훼손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6조(접수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세부주소에 한함),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피신청인의 변경)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사건의 분할 · 병합)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 2 절 조정전 사건의 처리

제12조(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2. 조정기일에 구술
3.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 단, 제25조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7.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그 통지의 도달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정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한다. 이 경우 합의의사의 확인은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합의 내용
4. 합의 성립의 연월일

③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조정절차

제14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2. 당사자의 출석에 의한 진술이 조정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③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 성명,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②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조정기일 등의 통보)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진행)

① 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조정결정

제18조(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정결정 사항
5. 조정결정 이유
6. 작성 연월일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사자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각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정결정사항
5. 조정성립 연월일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서 각 1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한다.

제20조(조정의 불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22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2.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24조(사건의 이첩)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25조(재조정 신청)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 재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26조(정보제공청구 등)

①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

제27조(소명자료의 보완)

① 조정부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부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9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접수된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분쟁조정절차의 준용)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청"은 "청구"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31조(문서 등의 보관)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조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의 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피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해당 정보위치(URL 등)					
*신청취지 (중복체크 가능)	☐ 해당정보의 삭제 ☐ 사과문 게재		☐ 손해배상 (원) ☐ 기 타 ( )		
*신청이유	※ 별지 첨부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의 주소 · 전자우편 중 한가지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 수 자	부 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

조정 위임장

<table>
<tr><td rowspan="3">위 임 인
(본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주 소
(소재지)</td><td row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전 자 우 편</td><td></td></tr>
<tr><td rowspan="4">수 임 인
(대리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주 소
(소재지)</td><td row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전 자 우 편</td><td></td></tr>
<tr><td>위임사항</td><td colspan="4"></td></tr>
</table>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또는 서명)

수임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조정신청 취하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취 하 사 유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조 정 전 합 의 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합의내용		
합의성립 연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지 제10호 서식〉

조 정 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조정결정 사항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피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

정 보 제 공 청 구 서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청구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해당 정보위치 (URL 등)	
청 구 정 보	□ 성 명 □ 주 소 □ 전 자 우 편 주 소 □ 기 타 연 락 처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종류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유형	□ 명예훼손 □ 모욕 □ 성폭력 □ 스토킹 □ 기타( )
권리침해 사실	※ 별지 첨부 가능
제 공 방 법	□ 전자우편 □ 우편 □ 모사전송 □ 방문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table>
<tr><td rowspan="3">청구인
(본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주 소
(소재지)</td><td row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전 자 우 편</td><td></td></tr>
<tr><td rowspan="4">수임인
(대리인)</td><td>성 명
(대표자)</td><td></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주 소
(소재지)</td><td row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전 자 우 편</td><td></td></tr>
<tr><td>위임사항</td><td colspan="4"></td></tr>
</table>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수임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3. 주요 관련 기관

기 관	내 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통신민원 (불법 · 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 신고) – 분쟁민원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www.kocsc.or.kr	국번없이 137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제도 개선	www.kcc.go.kr	국번없이 13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주민등록번호 등)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www.krcert.or.kr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불만 · 피해 신고	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소액결제 중재센터	전자상거래 피해 신고	www.spayment.org	1644-2367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www.pac.or.kr	02-397-3000, 3010, 3100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www.iapc.or.kr	1599-0075
서울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	www.seoul1366.or.kr	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및 지원	www.klac.or.kr	국번없이 132

4. 찾아오시는 길



주 소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전화 02-3219-5114, 5333
민원접수 국번없이 1377

■ 지역사무소

부산사무소 612-0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번지 센텀IS타워 20층
광주사무소 502-728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6층
대구사무소 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황금동)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4층
대전사무소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41(둔산동) 신용보증기금빌딩 5층
강원사무소 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9번지 9층
서초사무소 137-8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5층

MEMO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열어갑니다